

외국인 보호(수용)제도의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

- 황필규(사법연수원생), 2004. 4

1. 외국인 보호의 법적 성격
2. 외국인 보호의 법적 근거상의 문제점
3. 외국인 보호의 규정상의 문제점
 - (1) 목적
 - (2) 처우의 원칙
 - (3) 보호장소
 - (4) 보호기간
 - (5) 고지사항
 - (6) 수용
 - (7) 면회
 - (8) 청원
 - (9) 생활
 - (10) 계구 사용
 - (11) 격리 수용
 - (12) 언어 문제
 - (13) 시행세칙의 대외비 문제
4. 외국인 보호의 실패상의 문제점
 - (1) 처우의 원칙
 - (2) 단속, 보호절차
 - (3) 수용시설
 - (4) 급여와 대여
 - (5) 급식
 - (6) 위생과 진료
 - (7) 생활
 - (8) 면회와 통신 등
 - (9) 안전과 질서유지
 - (10) 강제퇴거절차 등
 - (11) 언어 문제
 - (12) 난민 문제
 - (13) 실패조사
 - (14) 기타

1. 외국인보호의 법적 성격

외국인보호의 법적 성격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행정상 직접강제임.

직접강제란 의무자가 행정법상 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직접적으로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임.

- 출입국관리법 제51조(보호) 제1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 제1항 각호의 1(강제퇴거의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보호 및 보호해제) 제1항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때에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그를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호할 수 있다.

2. 외국인보호의 법적 근거상의 문제점

직접강제도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이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출입국관리법 제3절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보호, 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보호명령서의 집행, 보호의 통지,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외국인의 일시 보호, 피보호자의 처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5절 제63조에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보호 및 보호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6절 제65조부터 제66조까지 보호의 일시 해제, 보호 일시 해제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출입국관리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보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개념규정이 없고, 피보호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실력 행사라는 '보호'의 실질적 내용, 즉 피보호자의 기본권 제한의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이를 법무부령에 포괄 위임하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음. 이는 거의 유사한 형식의 주거 및 신체의 자유의 제한을 의미하는 구금 형의 집행내용에 관하여 행형법에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됨.

- 출입국관리법 제57조(피보호자의 처우)

외국인보호실 및 외국인보호소의 설비, 보호되어 있는 자의 처우, 급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행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아울러 미결수용자에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헌재결 99.5.29. 98헌바70

법률유보의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 헌재결 91.7.8. 91헌가4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헌법이 특히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법률에 의한 처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기본권보장 우위사상에 비추어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므로, 그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3. 외국인보호의 규정상의 문제점

직접강제는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 중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크게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강제집행수단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되어야 함. 또한 직접강제는 비례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보다 엄격한 절차법적 실체법적 통제가 가해져야 함. 특히 주거의 자유 또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직접강제의 경우에는 적법절차의 원칙상 영장주의의 적용여부가 검토되어야 함.

비록 헌법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인에게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실체적, 절차적 보장, 종교의 자유, 예술, 학문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등은 적극적으로, 재산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환경권, 보건권, 노동3권 등을 제한적으로 헌법상 보장됨.

외국인보호의 내용은 법무부령인 외국인보호규칙, 법무부훈령인 동 규칙 시행세칙 및 법무부령인 보호외국인의의류및침구의제식에관한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바, 외국인보호는 외국인이 제46조 제1항 각호의 1(강제퇴거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어 보호하는 경우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어 보호하는 경우 모두 강제퇴거의 심사나 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한 신병 확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주거 혹은 신체의 자유의 제한에 그쳐야 하며,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징벌이나 교정교화의 목적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그런데, 외국인보호에 관한 출입국관리법 제57조(피보호자의 처우)의 법률유보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배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한 신병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보호의 내용을 규정한 규칙 등이 징벌이나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구금형의 내용을 규정한 행형법이나 동법 시행령보다도 질적 양적으로 강한 기본권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헌재결 90.9.3. 89헌가95

과잉금지의 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용한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

며(방법의 적정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화),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 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1) 목적

외국인보호규칙은 외국인의 '보호'의 의미나 기본권 제한과의 관계를 밝히는 어떠한 내용도 없이 외국인의 '적절한 처우'를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그 제정목적은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행형법은 기본권의 제한의 근거가 되는 행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외국인보호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보호소에 보호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절한 처우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행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아울러 미결수용자에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처우의 원칙

외국인보호규칙은 '보호소의 안전과 그밖에 보호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을 기본권 보장의 한계로 규정하여 보호소의 관리의 관점에서 외국인 처우에 접근함에 반하여, 행형법은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을 수용의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음.

- 외국인보호규칙 제2조(처우의 원칙) 제1항

보호외국인에 대하여는 보호소의 안전과 그밖에 보호관리에 지장에 없는 범위 안에서 그가 속하는 국가의 관습이나 풍속에 따른 생활과 종교적인 행위가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 행형법 제1조의3(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수용자의 차별은 금지된다.

(3) 보호장소

출입국관리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이 보호장소로 '구치소, 교도소' 등도 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신병확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에 대하여 그 목적을 망각한 채 보호외국인을 형사범인 수형자와 구별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입법임.

- 출입국관리법 제52조(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제2항

보호할 수 있는 장소는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보호 및 보호해제) 제1항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때에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그를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호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보호장소의 지정)

법 제52조 제2항 및 법 제63조 제1항에서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라 함은 구치소, 교도소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4) 보호기간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제46조 제1항 각호의 1(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어 강제퇴거심사를 위하여 보호하는 경우는 10일(1차 10일에 한하여 연장 가능함)의 보호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어떠한 보충해석규정도 없음)에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무기한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있음.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 주거의 자유에 대한 과잉금지 원칙, 본질적 내용침해금지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출입국관리법 제52조(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제1항

보호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보호 및 보호해제) 제1항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때에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그를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호할 수 있다.

-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헌재결 89.12.22. 88헌가13

토지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이라는 것은 토지재산권의 핵이 되는 실질적 요소 내지 근본요소를 뜻하며,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라 하는 것은 그 침해로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지고 사유재산제도가 형해화되어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 헌재결 96.8.29. 94헌바15

명확성의 정도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그 적용대상과 금지된 행위를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이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헌재결 92.2.25. 89헌가104

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법률에 있어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가 다르며 어떤 규정이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5) 고지사항

외국인보호규칙은 보호외국인에게 '보호소의 생활규칙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여 주로 규율과 관련한 사항의 고지만을 예정하고 있으나 행형법은 수용자에게 접견 및 서신, 청원 등 수용자의 기본적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외국인보호규칙 제6조(생활규칙 등 알리기) 제1항

보호소장은 보호소의 생활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보호할 외국인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 행형법 제8조의2(고지사항)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2. 접견 및 서신에 관한 사항
3. 규율, 징벌 및 청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6) 수용

외국인보호규칙은 혼거수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행형법은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음. 보호외국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독립적인 생활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규정함이 바람직함.

- 외국인보호규칙 제7조(방 가르기)

제1항 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을 남자가 여자로 갈라 방을 따로 쓰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가족에게 같은 방을 쓰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2항 보호소장은 보호소의 시설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종교 또는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다름 염려가 있는 보호외국인은 이를 분리하여 다른 방을 쓰게 할 수 있다.

제3항 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따로 독방을 쓰게 할 수 있다.

1. 형기 만료, 형 집행정지 그 밖의 사유로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 또는 소년원에서 출소한 자
2. 전염될 수 있는 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자
3. 그밖에 보호소장이 분리 보호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행형법 제11조(독거수용)

제1항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제2항 혼거수용의 경우에는 수용자의 형기, 죄질, 성격, 범상, 연령, 경력 등을 참작하여 거실을 구별 수용한다.

(7) 면회

외국인보호규칙의 경우 보호명령만을 받은 자와 강제퇴거명령도 받은 자, 일반인과 변호인을 구별하지 않고 면회를 보호소장의 재량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특히 일반인의 경우에는 재량허가조차도 보호외국인과의 관계, 면회사유 등을 고려하여 '보호소의 안전이나 질서유지 또는 보호외국인의 건강이나 위생'에 '지장'이 없는 때 준수사항'을 정하여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뿐만 아니라 '보안상의 이유'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일반면회와 특별면회를 불문하고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면회금지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강제퇴거(심사)를 위한 신병의 확보라는 보호목적에도 어긋나며 집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행형법과 비교하여 보아도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판단됨.

- 외국인보호규칙 제30조(일반면회)

제1항 보호소장은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외국인에 대한 면회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헤아려 보호소의 안전이나 질서유지 또는 보호외국인의 건강이나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준수사항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보호외국인과의 관계
2. 면회사유와 시간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회는 면회실 안에서 담당공무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여야 하고, 그 시간은 원칙적으로 30분 이내로 한다.

- 외국인보호규칙 제31조(특별면회)

보호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외국인에 대한 면회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간과 장소 그 밖의 준수사항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보호외국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영사
2. 보호외국인의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인 변호사

-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42조(면회) 제4항

1. 신청 받은 보호외국인이 특별 계호 등으로 격리중인 때
2. 신청 받은 보호외국인이 면회에 응할 의사가 없을 때
3. 보호소 내 보안상 불가피하여 소장이 면회를 전면 중지한 때
4. 기타 소장이 면회신청자와의 관계 및 면회사유 등으로 보아 면회를 불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때

-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43조(신청절차 등)

제1항 면회신청자(전화나 우편신청자 포함)는 면회당일 서식 제29호를 작성하여 심사과 소속 출입국관리공무원(이하 "심사담당"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있어 면회신청자는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의 경우 주민등록증, 외국인의 경우 여권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항 면회의 신청, 접수 및 시간은 10:00~12:00와 14:00~16:00에 한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장이 허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헌법 제12조 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헌재결 92.1.28. 91헌마111

변호인의 조력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의미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적 내용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일 것이다. 제4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형태의 구금 및 수감상태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제18조 제4항의 '피구금자 또는 피수감자와 그의 변호인 사이의 대담은 법 집행 공무원의 가시거리 내에서 행하여 질 수는 있으나 가청거리 내에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듯이, 관계공무원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대담내용을 들을 수 있거나 녹음이 가능한 거리에 있어서는 아니 되며 계호나 그 밖의 구실아래 대화장면의 사진을 찍는 등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유로운 접견에 지장을 주어서도 아니 될 것이다.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 행정법 제18조(접견)

제1항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제2항 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3항 소장은 수용자의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 제1항의 규정(미결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접견)에 의한 변호인과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8) 청원

외국인보호규칙은 법무부장관과 보호소장에 대한 청원을 단순히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행정법령은 소장과의 면담(신청 시 필요적임)과 제3자(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을 철저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교도소장 이하 교도소 내 공무원의 청원의 내용에 대한 접근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음. 또한 '보안상의 이유'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서 '보호소 안'에서의 '자신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한정하고 '공동청원', '다른 외국인에 대한 사항', '막연한 희망사항', '감정적인 의견' 등에 대한 청원을 금지하여 그 범위가 과도하게 제한적이고 그 내용이 지극히 추상적이며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검열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 외국인보호규칙 제27조(청원)

제1항 보호외국인은 보호소에서 받은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보호소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2항 담당공무원은 보호외국인이 청원하고자 하는 경우 곧바로 보호소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의 경우에는 보호소장이 이를 받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항 보호외국인에 대한 처리결과는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항 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의 청원을 지지하거나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38조(청원권자)

보호외국인은 누구든지 보호규칙 제27조 규정의 청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보호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동청원을 할 수 없다.

-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39조(청원사항)

제1항 보호외국인의 청원내용은 보호소 안에서의 자신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한한다.

제2항 보호외국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청원은 할 수 없다.

1. 다른 보호외국인에 대한 사항
2. 처우와 관련이 없는 막연한 희망사항
3. 그 밖의 감정적인 의견이나 행정기관의 처분사항

-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41조(청원에 대한결정)

제1항 경비담당은 보호외국인으로부터 제38조 규정에 의한 청원이 있는 때에는 경비과장을 경유하여 소장에게 보고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원자를 면담할 수 있다.

- 행정법 제6조(청원)

제1항 수용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

제2항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하고자 하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당해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항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순회점검공무원이 구술에 의한 청원을 청취하는 때에는 교도관을 참여시키지 못한다.

제5항 소장은 수용자의 청원을 지지하거나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항 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는 당해 소장이 지체 없이 이를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행정법 제5조(교도소 등의 순회점검 등)

제1항 법무부장관은 교도소 등을 순회 점검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판사와 검사는 교도소 등을 수시로 시찰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학술연구 기타 정당한 이유로 교도소 등을 참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소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행정법 시행령 제9조(소장과의 면담)

제1항 수용자는 처우 및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소장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담을 신청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면담부에 기재한 후 순서에 따라 면담을 하여야 하며 당해 수용자에게 표시한 의견의 요지를 면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9) 생활

강제퇴거의 심사나 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한 신병 확보라는 보호의 목적과 공동생활을 위한 질서유지 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와 신체의 자유의 제한을 제외하고는 보호외국인에게는 최대한의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되어야 함. 이는 '자유시간의 기회 보장'이라는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위 보호목적 등에 근거한 '최대한의 자유로운 생활 보장'의 원칙을 천명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 외국인보호규칙 제22조(하루 생활) 제1조

제1항 보호외국인은 보호소장이 정하는 하루생활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하루생활표에는 식사시간, 자유시간, 운동시간 및 취침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 외국인보호규칙 제23조(자유시간)

제1항 보호외국인은 자유시간을 누릴 기회를 가진다.

제2항 보호외국인은 자유시간에 휴게실이나 방 등에서 스스로의 시간을 가지거나 다른 보호외국인과 어울릴 수 있으며,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 등을 읽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항 보호소장은 보호소의 안전이나 질서유지 또는 보호외국인의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10) 계구 사용

신체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직접적인 실력 행사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제한하는 계구의 사용에 있어서 외국인보호규칙은 행정법령과는 달리, 계구의 종류를 특정하고 있지 않고(‘그밖에 보호외국인의 계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구’), 보호소장의 명령이 전제되지 않는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한 사용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징벌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 및 계구의 사용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어떠한 규정도 하고 있지 아니함.

한편, 행정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제18회 법무부정책위원회에서 수용자에 대한 계구사용에 관한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의결함. 이 의결안에서는 기존에 훈령으로 되어있던 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등에관한규칙을 법무부령으로 격상하여 제정하기로 하고, 동 규칙에 계구의 현대화, 계구 사용 요건의 엄격화 및 구체화 등을 규정함.

- 외국인보호규칙 제38조(계구사용)

제1항 담당공무원은 보호외국인이 도주, 폭행, 자살 또는 자해 등을 할 염려가 있고 이를 달리 막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다음의 계구를 채울 수 있다.

1. 수갑
2. 포승
3. 가축재갈
4. 그 밖의 보호외국인의 계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구

제2항 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구를 채운 때에는 곧바로 보호소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경비일지에 그 내용을 적어 두어야 한다.

- 행정법 제14조(계구)

제1항 교도관은 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제2항 계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포승
2. 수갑
3. 사슬
4. 안면 보호구

제3항 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 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계구의 모양, 규격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행정법 시행령 제45조(계구의 사용)

계구는 당해 소장의 명령 없이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사용 후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행정법 시행령 제46조(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등)

제1항 포승과 수갑은 소요, 폭행, 도주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자와 호송중의 수용자에게, 안면보호구는 제지에 불응하고 고성을 발하거나 자해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에게 각각 사용한다.

제2항 사슬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승과 수갑으로 수용자를 제지할 수 없거나 기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안면보호구는 6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특히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시간을 연장 사용할 수 있다.

- 계구제도 개선 (2004.1.15. 제 18 회 법무부정책위원회)

* 추진배경

- 계구 관련 행정법 및 관련 규정이 낙후되어 있고, 계구사용의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모호하여 인권침해적 소지가 있다는 비판

* 개선내용

- 기존에 훈령으로 되어 있던 '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등에관한규칙'을 법무부령으로 다시 제정

- 계구의 현대화

- 가죽수갑의 폐지 및 벨트형 수갑의 도입

- 행정법 개정시 사슬과 포승을 폐지하고, 발목용 • 의료용 계구 등 대체계구의 도입을 추진. 그 이전에도

사슬과 포승의 사용을 최소화

- 계구사용요건의 엄격화 및 구체화

- 계구사용명령절차의 구체화 및 계구의 계속사용심사 및 사후통제의 강화
- 식사, 목욕 등을 위한 계구사용의 일시중지 등 계구사용 제한 사유 규정

(11) 격리 수용

외국인보호규칙상의 격리 수용이 단순한 독거수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인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이를 행형법상의 가장 중한 징벌인 금치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까닭 없이 단식을 한 때' 등 부적절한 요건을 포함하고 있고, 그 기간이나('보호소장이' '기간을 정하여') 격리 수용의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 비례성의 원칙, 의무관의 건강 진단 등 행형법령에서조차도 보장하고 그 어떠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한편, 행형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제17회 법무부정책위원회에서 수용자 징벌제도를 개선하기로 의결함. 이 의결안에서는 징벌대상행위 축소, 징벌 요건 및 절차적 기본권 강화, 금치기간의 축소 및 연속금치 제한, 징벌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징벌실효제도 도입 등을 결정함.

- 외국인보호규칙 제37조(격리수용)

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따로 독방에 격리 보호할 수 있다.

1. 도주, 난동, 폭행, 시설이나 물품파손 그 밖의 보호소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한 때
2.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때
3.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물품을 몰래 지니고 있는 때
4. 자살이나 자해를 꾀하거나 또는 까닭 없이 단식을 한 때

- 행형법 제46조(징벌)

제1항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1. 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의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행위
2. 자해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 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4. 흥기, 주류 등 허가되지 아니하는 물건을 제작, 소지, 사용, 수수 또는 은닉하는 행위
5.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제2항 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1월 이내의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
3. 2월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4.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5. 2월 이내의 금치

제3항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 후의 정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수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4항 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행정법 제47조(징벌위원회)

제1항 징벌은 징벌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2항 징벌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 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당해 교도소 등의 부소장과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행정법 제45조(징벌의 집행)

제1항 징벌은 징벌의 선고가 있는 후 지체 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제2항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에 수용하고 그 기간 중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 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 시청 및 자비부담 물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미결수용자의 소송서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발은 예외로 하며, 소장이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 서신수발 또는 도서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제3항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의무관이 그의 건강을 진단한 후 그 건강에 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제4항 소장은 수용자가 금치의 처분을 받아 접견 및 서신수발이 금지된 경우에는 당해 수용자의 가족 또는 친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징벌제도 개선 (2003. 12. 11. 제 17 회 법무부정책위원회)

* 추진배경

징벌과 관련한 행정법 및 관련 규정이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징벌 중 재소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과도한 징벌로 인한 인권침해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징벌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

* 개선내용

- 단식, 정신병적 소인에서 기인한 자해행위 등을 징벌대상행위에서 제외하는 등 징벌대상행위를 축소하고,

징벌 요건을 강화

- 금치기간의 축소 및 연속금치의 제한

-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중 및 금치중의 처우 개선

- 징벌위원회의 외부위원을 2인 이상으로 확대

- 징벌절차에서의 절차적 기본권 강화

- 징벌 집행 후 일정 기간 동안 규율위반을 하지 아니할 경우 징벌을 실효시키는 징벌실효제도의 도입

(12) 언어 문제

한국인들이 감시, 감독하는 외국인들의 고립된 생활시설이므로 언어상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의사소통이 되지 않거나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입게 될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보호외국인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음.

(13) 시행세칙의 대외비 문제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법무부 훈령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규정하고 있고 이 내용은 '보안상의 이유' 외부에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아니하는 바 법령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오히려 번역 등을 통하여 보호외국인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임. 기본권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규정들이 대외비라면 일반인이 알 수 없는 기준들에 근거하여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내용과 형식으로 기본권, 인권을 제한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행정법령보다도 더 심각한 피구금자의 기본권 제한 근거를 숨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 규정 내용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떠나 비공개 행위자체만으로도 헌법상 기본권 보장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

4. 외국인보호의 실태상의 문제점

<1> 연합뉴스 1990.01.01 - 2004.03.25. 검색어 '외국인보호소'

<2> 인권하루소식 1993.09.07. - 2004.03.25. 검색어 '외국인보호소'

<3> 한겨레신문 1997.01.01. -2004.03.25. 검색어 '외국인보호소'

(1) 처우의 원칙

- 포울 씨는 편지에서 "우리는 범죄자로 취급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근에 기자, 2002.11.01. 인권하루소식)

- 현재 외국인보호소는 외국인 범죄자나 불법체류자가 강제주방에 앞서 잠깐 몸을 의탁하는 곳이라는 인식에 머물러 있음. 그러나 외국인보호소를 잠시 거쳐가는 대기소가 아니라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수용자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 등을 고려해 단기간이라도 강제송환에 따른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임.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외국인 수용자 중에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왔다 불법체류 신분이 된 사람도 많은 만큼 이들의 처지를 감안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계창 기자, 2003.09.28. 연합뉴스)

- 이 땅에서 일하다가 본의 아니게 단속에 걸려 강제 출국하는 사람들이 거쳐가는 곳이 화성이나 여수에 있는 외국인보호소임. 영어로는 'processing center'라고 함. 쉽게 얘기하면 외국인보호소는 감옥이 아닌, 출국 절차를 밟는 곳이라는 말임. 그런데도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보호소를 감옥이라고 생각함.

(고기복 기자, 2004.03.22. 오마이뉴스)

(2) 단속, 보호절차

1) 적법 절차

- 보호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흔함. 지난해 11 월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가 국가인권위 용역사업으로 수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심층면접에 응한 14 명의 보호소 수용자 중 상당수가 서면으로 발부하도록 되어 있는 보호명령서를 본 적이 없고, 있더라도 (영어 이외에는 통역/번역이 제공되지 않아)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했다고 응답했음.

(배경내 기자, 2003.09.30. 인권하루소식)

-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단속과 수용시설 부족이 불러올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단속 첫날인 지난 17일 안산 역에서는 30여 명의 합동단속반이 지나가는 외국인에 대해 무차별 검문을 실시, 11명을 연행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또 경기도 마석에서는 단속반이 성생공단으로 들어와 3명을 체포해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송했으나 그 중 2명은 단속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풀려나기도 했음. 이 과정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수갑을 채워 충격을 준 바 있음. '불법체류자 단속'을 빌미로 외국인이면 무차별적으로 검문하고 일단 연행한 뒤 신원을 확인하는 관행에 대해 조영선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연행하면 불법연행이 되며 단속대상이 되는지 입증할 책임은 단속반에게 있다"고 설명했음. 그는 "현재 단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방법까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도 "불법체류자는 형사범이 아니라 강제퇴거의 대상일 뿐"이라고 전제하고 "현행법 다루듯이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있다"면서 "수갑을 채우는 것도 도주의 우려나 공무집행 방해 등 엄격한 요건이 갖춰져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음. 여관이나 고시원에 불쑥 들어가서 방마다 일제 검문하는 방식의 합법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했음. 이 변호사는 추가 범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보호명령서'만으로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수색과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등을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음.

(강성준 기자, 2003.11.21. 인권하루소식)

- 19일 경기도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시찰하고 수용자들을 면담하는 등 실지조사를 진행한 인권위 관계자는 "입소 시 인권위 진정 절차에 대한 고지도 없었다"고 전했음.

(강성준 기자, 2003.11.21. 인권하루소식)

2) 가혹행위 등

- 법무부 보호외국인 처우개선 방안이 발표된 2000.03.08. 당일 경찰이 중국동포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또 다시 밝혀짐.

(2000.03.14.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호름)

*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단속에 앞서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고 단속 과정의 인권침해 시비도 최대한 줄이기로 함.
(외국인 근로자 인권대책 전문위원회, 2001.07.11. 연합뉴스)

- 지난 26일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비두, 라산 씨는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행진 도중 진압경찰에 의해 구로경찰서로 연행됐다 목동출입국관리사무소를 거쳐 28일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됐음. 이주지부는 두 사람이 옷옷이 찢기고 수갑을 뒤로 채인 채 종로에서 구로서까지 연행됐으며, 경찰이 수갑을 찬 채로 물을 먹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구로서에서 목동출입국관리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는 경찰 8명이 "산에 가서 물어버리겠다"며 옷으로 얼굴을 감싼 채 집단폭행하기도 했다는 것이 이주지부의 주장임. 선전국장 쏘나 씨는 "경찰의 과잉대응과 관련해 종로서를 상대로 27일 국가인권위에 진정했고, 29일에는 구로서를 상대로 진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한편 28 일 화성 외국인보호소가 강제출국을 위한 사전조치로 방글라데시 대사관에 여권을 신청하려 했으나, 이들은 여권신청서 서명을 거부했음. 이들을 두 차례 면회한 민주노총 법률원 서상범 변호사는 "같이 연행됐던 한국인 1 명이 다음 날 풀려난 것을 보면 시위에 단순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재입국을 금지하는 강제출국 조치는 이들 이주노동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했음. 민주노총도 29 일 성명서를 내어 온갖 험한 일을 하며 한국경제를 지탱시키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표적 연행과 강제추방을 규탄하고 이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할 계획임.

(강성준 기자, 2003.10.29. 인권하루소식)

-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이 가스총까지 사용해 이주노동자들을 연행하고 연행 중에도 폭력을 행사한 데 대한 비난이 확산되고 있음. 명동성당과 성공회대성당 등지에서 강제추방 저지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주노동자 농성투쟁단은 8 일 오후 2 시 30 분경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 모여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지난 7 일 방글라데시 대사관 근처에서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연행된 두 명의 이주노동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음. 당시 현장에 있던 네팔 출신 J.K 푸리 씨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 2 명은 스크럼을 짜고 연행에 저항하던 이주노동자들을 향해 1 미터 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가스총을 한 방씩 발사했음. 이후 단속반원들은 가스총을 맞고 실신한 이주노동자 깨비 씨와 혁 씨를 연행해 갔음. 8 일 이들을 면회한 명동성당 농성지원단은 "당사자들이 차로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얼굴과 머리를 맞았다고 말했다"고 전했음. 한편 비자 신청을 목적으로 방글라데시 대사관을 방문했다가 연행상황을 목격한 이정호 신부(마석 살롬의 집 소장)도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단속반원들에 의해 발길질을 당하고 대로변에 내팽개쳐지면서 실신하기도 했음.

(배경내 기자, 2004.01.09. 인권하루소식)

- 93 일째 서울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농성중인 이주노동자 합법화 농성투쟁단장 겸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장인 네팔인 서머르 타파(32.1994 년 입국)씨가 15 일 낮 12 시 30 분께 서울 종로구 혜화동성당 앞에서 서울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 의해 연행됐음. 농성투쟁단 관계자는 "오늘 낮 혜화동 성당에 있는 필리핀인 동료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서류를 전해주러 갔던 타파 씨가 출입국관리소 직원 5 명에 의해 승용차에 태워져 연행됐다"고 밝혔음. 출입국관리소 측은 타파 씨를 화성 외국인보호소로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 울 기자, 2004.02.15. 연합뉴스)

- 샤멀 씨의 연행은 한국정부가 명동성당 농성단을 본격적으로 와해시키기 위한 표적단속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임. (강성준 기자, 2004.02.17. 인권하루소식)

- 이미 연행돼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깨비, 혁, 샤멀타파 씨뿐만 아니라 명동성당농성투쟁단(아래 농성단) 소속 마슴 씨 등 7 명의 이주노동자들은 17 일부터 단식에 들어갔음. 농성단은 이날 오후 3 시 서울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이주노동자 단식투쟁 선포대회'를 열고 연행된 이주노동자의 석방을 요구했음. 집회가 끝나고 해산할 무렵, 경찰의 비호 아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로 연행하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다치고 결국 농성단 소속 굽다 씨가 또다시 연행되었음. 이날 집회 장소 주변에는

50 여 명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잠복해 있었고, 미리 차량을 준비해놓은 길로 미루어, 치밀하게 계획된 표적단속의 전형임을 알 수 있었음.

(박석진, 2004.02.18. 인권하루소식)

- 지난 2월 15일 서울 대학로에서 연행되었음. '연행' 이 아니라 '납치' 라고 말할 수 있음. 갑자기 여기 저기서 서너 명이 뛰어 오면서 저를 잡아 수용차에 집어 넣었음. 법무부가 1월 19일, "2월 말까지 단속을 하지 않겠다" 고 발표해 놓고, 저를 연행한 것은 정말 비인간적 태도임. 지금은 여수 외국인 보호소에서 4일 현재 17일째 단식농성 중임.

(샤말타과 민주노총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 지부장)

- 법무부 소속 단속반원들, 이주노동자 강제연행에 항의하는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목사에게 욕설 및 행패...출입국관리소직원의 폭력적 연행으로 인권침해 심각(3.9)

(2004.03.16. 인권하루소식)

- 17일 법무부와 민주노총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12일까지 열흘 동안 계속된 출입국관리소와 경찰의 합동단속으로 모두 1469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이 연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 9일에는 경기 안산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 앞에서 농성 중이던 외국인 노동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선교센터 소장인 박천용 목사가 단속반에 의해 30여 m를 끌려가는 사건이 불거지기도 했음. 이에 대해 민주노총 쪽은 법무부가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탄핵정국을 핑계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음. 민주노총 주진우 비정규사업실장은 "지난달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한 뒤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으나 법무부 실무자들이 이를 기피하고 있다" 며 "대화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 고 말했음.

(유신재 기자, 2004.03.17. 한겨레신문)

3) 신병의 확보

-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불법체류 중국동포가 외국인보호소에서 출소한 뒤 재판을 앞두고 잠적, 당국의 불법체류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냄. 5월 2일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박씨는 석방 후 곧바로 경기 화성의 외국인보호소로 신병이 인계됐지만 같은 달 15일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보증금 300 만원에 변호인이 박씨의 신병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박씨를 일시 출소시켰음.

(조계창 기자, 2001.10.16. 연합뉴스)

- 지난 15일, 강제추방에 맞서 농성을 하던 이주노동자 대표가 실종됐음. 대학로 번잡한 길에서 갑자기 네댓 명이 달려들어 강제로 차에 태우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었음. 혹시 출입국관리국에서 연행해 간 것이 아닌가 싶어 확인을 요구했지만 그곳에서는 시치미를 뚝 뚝 뚝 뚝. 수도권 소재 외국인 보호소들도 한결같이 '그런 사람은 입소한 적이 없다' 는 답변이었음.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출입국은 연행 사실을 시인했음. 여수보호소로 보냈다는 것임.

(이란주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정책국장, 2004.02.18. 한겨레신문)

- 화성외국인보호소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수감 중인 이주 노동자 10명도 미등록 이주 노동자 합법화 등을 요구하며 6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음.

(이재성, 김태규 기자, 2004.02.22. 한겨레신문)

4) 단속인력

- 정부는 16일부터 불법 체류자 본격 단속에 나설 예정이지만 인력 등이 크게 모자라 단속에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단속 대상은 출국하지 않은 4년 이상 불법 체류자와 밀입국자 8만 여명과 지난달 말까지 취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4년 미만자 3만 7천여 명 등 모두 12만여 명임. 그러나 정부의 단속인원은 기존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국 직원 185명과 경찰 500~1천명에 불과함. 노동부 산하 각 지역 노동사무소 직원들은 단속권한이 없어 계도와 동향조사 업무에 머물 것으로 보임.

(홍용덕, 김동훈 기자, 2003.11.09. 연합뉴스)

-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법무부와 노동부, 중소기업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하며 법무부와 경찰은 단속업무, 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은 계도활동을 주로 맡게 됨. 법무부와 경찰은 전국을 50개 지역으로 구분, 1차적으로 내년 6월말까지 1개 지역당 15명 안팎의 경찰 인력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동향조사요원을 투입함. 서울 및 경기남부 지역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서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경찰과 합동으로 모두 350명 17개 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17일 오후부터接客업소등 불법체류 취약업소를 중심으로 24시간 단속을 시작할 예정임. 법무부는 기업, 단체나 개인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숨겨주거나 집단행동을 선동해 단속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 등을 적용, 엄정 대응키로 했음.

(정주호 기자, 2003.11.16. 연합뉴스)

(3) 수용시설

1) 수용장소

- 외국인보호소의 정원이 넘칠 때에는 교도소까지 가서 지내기도 함.

(심보선 기자, 2001.07.05. 인권하루소식)

- 권기섭 노동부 외국인고용대책단장은 "내년 6월까지 대대적 단속을 벌여 불법 체류자 수를 최소 3만 명 떨어뜨릴 계획"이라며 "수용시설은 법무부 쪽에서 교정시설 등을 활용하면 충분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홍용덕, 김동훈 기자, 2003.11.09. 연합뉴스)

* 법무부는 또 적발된 불법체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하는 방안의 경우 인권침해 논란을 우려, 일단 철회하고 화성, 여수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자체 보호시설에 수용토록 했음.

(정주호 기자, 2003.11.16.)

- 보호소 과밀 수용 문제가 더욱 커지게 되면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 2001 년 대대적인 단속 당시 일어났던 문제가 '재방송'될 수 있음. 그 해 6 월 체포된 방글라데시 출신의 마직 씨의 경우 화성보호소가 만원이라는 이유로 의정부교도소에 간헐음. 요도결석으로 고생하고 있던 그는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도 없었음.

(강성준 기자, 2003.11.21. 인권하루소식)

2) 분리수용

* 수용자들을 중국과 동남아시아, 중동회교권 등 국적, 종교, 인종 등을 감안해 분리수용하기로 함.

(법무부 보호외국인 처우 개선방안, 2000.03.08. 한겨레신문)

3) 수용한도, 관리인력

- 1999 년 1 월 건립된 전남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이 인력 부족으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음.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130 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사무소 보호실은 최근 중국 조선족 밀입국자 증가로 항상 100 명 이상을 수용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직원은 7 명뿐임. 이에 따라 직원 3-4 명이 공익근무요원 5 명의 지원을 받아 12 시간씩 교대로 보호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100 여명을 관리하는 데에는 턱 없이 부족해 정문과 초소 근무자 2 명은 보안회사에 용역을 줘 경비를 보도록 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지난 12 일과 지난해 1 월 16 일에는 보호실내 식당에서 식사하던 조선족들이 식당 종업원 출입구와 환풍구로 탈출을 시도하자 근무자들이 이를 제지하려 했으나 제대로 막지 못해 9 명과 7 명이 각각 탈주했음. 당시 직원들은 모니터 감시실과 보호실 복도 등에 근무하고 있어서 식당에 있던 50 여명의 조선족을 감시하던 공익요원 4-5 명이 몸으로 이들을 제지했으나 탈주를 막는 데에는 역부족이었음.

(최은형 기자, 2000.09.21. 연합뉴스)

-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연건평 2 천 50 여 평에 3 층 건물로 400 여명을 수용할 수 있음.

(공병설 기자, 2001.05.07. 연합뉴스)

- 국내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수용하는 시설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화성 외국인보호소와 전남 여수 출입국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보호소 등 2 곳임. 90 명 정원인 여수외국인보호소는 주로 선박으로 서해안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밀입국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활용되고 있어 본격적인 의미의 외국인보호소는 화성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음. 연건평 2 천 500 여 평에 3 층 건물로 400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화성 외국인보호소는 TV 와 샤워시설, 체력단련장, 종교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100 여명의 외국인이

출국을 앞두고 수용돼있음. 보호소 내 관리인력이 부족한 현실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화성 외국인보호소의 경우 경비직원은 총 20 명이나 경비용역업체 직원 11 명과공익근무요원 3~4 명을 빼면 법무부 정식 직원은 간부까지 포함해 6명에 불과함. 이들 역시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데다 다언어적 환경에서 겪는 의사소통 장벽과 문화적 이질성 때문에 통제의 어려움 등 애로를 호소하고 있어 수용자 개개인에 대한 불만을 적절히 조정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임.

(조계창 기자, 2004.09.28. 연합뉴스)

- 정부는 16일부터 불법 체류자 본격 단속에 나설 예정이지만 수용시설 등이 크게 모자라 단속에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전국에는 14 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18 개 출장소 및 분소가 있음. 그러나 화성 외국인보호소와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산하 보호시설 2 곳에 300 여명 정도의 수용이 가능할 뿐, 나머지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당직실에서 10 여명 안팎을 수용하는 정도여서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게 보호소 설명임. 정숙현 화성 외국인보호소 심사과장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경우 여권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중국 등은 재발급에만 적어도 평균 1~2 개월이 걸리는데다 이들이 체불임금이 있다고 주장하면 강제출국도 어려워 단속 즉시 출국은 어려운 실정" 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김동훈 기자, 2003.11.09. 연합뉴스)

- 18 일 김해, 양산, 밀양을 제외한 경남도내 17 개 시, 군을 담당하는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관내 공단과 건설현장 등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1 만여 명 가운데 20%인 2 천여 명을 불법 체류자로 추정,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17 일 경찰 등과 2 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섰으나 정작 이들 외국인을 수용할 공간은 출입국관리사무소 2 층에 있지만 전체 대상자의 1%인 20 명선에 불과함.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또 부족한 공간은 전남 여수시의 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의뢰해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공간 역시 120 명만을 수용할 수 있을 뿐임. 불법 체류자들의 대부분이 기한이 지난 여권을 소지하는데다 임금 체불 등 문제를 안고 있어 최소 3, 4 일 이상의 수용 기일이 소요되는 점으로 미뤄 20 명 정도 검거되면 단속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보고 있음. 여기서 인권과 외교문제를 고려해 이들을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할 수도 없는 처지여서 단속이 형식에 그칠 것이란 지적임.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불법 체류자의 여권이 발급되도록 해당 주한 대사관 및 영사관에 촉구하고 체불 임금이 해결되도록 노동부에 협조를 구하는 등 신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만 기자, 2003.11.18. 연합뉴스)

- 19 일 경기도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시찰하고 수용자들을 면담하는 등 실지조사를 진행한 인권위 관계자는 "조사 당시 106 명이 수용돼 있었고 하루만에 5~60 명이 잡혀올 예정이어서 이번 단속으로 인한 과밀 수용이 불러올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게다가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있는 보호실까지 총동원하더라도 1000 명 정도만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년 6 월까지 이뤄질 합동단속에 따른 과밀수용 문제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강성준 기자, 2003.11.21. 인권하루소식)

* 법무부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 수용을 위한 외국인보호소 2 곳을 2005 년까지 추가 설립하기로 함.

(외국인 근로자 인권대책 전문위원회, 2001.07.11. 연합뉴스)

(4) 급여와 대여

- 한겨울에도 흠뻑 죄수복을 입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경실련 등 60개 사회단체 성명서, 2000.03.07. 한겨레신문)

(5) 급식

- 라면이나 빵, 그리고 오래된 묵은 정부미로 끼니를 때우고 있음.

(2000.03.11. 인권하루소식 논평)

* 라면과 빵 위주로 돼 있는 아침식사를 경양식을 가미한 한식 위주로 바꾸기로 함.

(법무부 보호외국인 처우 개선방안, 2000.03.08. 연합뉴스)

- 포올 씨는 편지에서 "보호소 내 급식은 언제나 건더기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고근예 기자, 2002.11.01. 인권하루소식)

(6) 위생과 진료

- 포올 씨는 편지에서 "우리는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근예 기자, 2002.11.01. 인권하루소식)

- "아픈 사람 참 많아요. 병원 못 갔어요." 지난 2일 서울 양천구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키르키즈스탄 출신 노동자 라프산잔 만수로프(23)가 *일째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음. 그는 "장기구금, 진료권차단, 출입국관리소 각성하라! 치료비 배상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목에 걸고 있었음. 2001년 2월 돈을 벌러 한국에 왔을 때 만수로프는 80kg의 건장한 체격이었다. 몸무게는 지난해 7월부터 20kg이나 줄었음. 유도 국가대표 출신이던 그는 한국에서 고속도로 아스팔트 까는 일, 이삿짐 나르기, 플라스틱 공장일 등을 했음. 처음 4개월 동안 3만원을 벌었다. 같은 해 7월 단속에 걸려 경기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면서부터 아프기 시작했음. "보호소 쪽에서는 진통제만 주고 '빨리 너희 나라로 가서 고쳐라'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보호소에 공중보건과의 오지만, 병원치료는 자비부담이 원칙이라 이주노동자들은 아파도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재 만수로프를 돌보고 있는 민주노총 이주노동자지부 김선희 국장) 만수로프는 항의의 뜻으로 그 해 10월 30일부터 11월 21일까지 23일 동안 보호소 안에서 단식을 했음. 단식으로 탈진해 입원했다가 왜 아픈지를 알게 됐음. 그의 병명은 '만성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으로, 혈소판 수치가 정상인의 10%밖에 되지 않아 아무런 외부적 충격이 없어도 뇌출혈이나 장출혈로 갑자기 숨지거나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음. 발병 뒤 2개월 동안 치료할 경우 60%는 치료가 되고, 40%는 죽음. 몇 차례의 승강이 끝에 보호소는 세 차례의 치료비와 입원비를 대주고,

일방적으로 퇴원절차를 밟았음. 만수로프는 병원서 버티다 지난달 28 일 퇴원해 현재 안양전진상복지관에 머물고 있음.

(이지은기자, 2003.01.05. 한겨레신문)

* 법무부는 또 경기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돼 본국 송환을 기다리고 있는 불법체류자 중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의 치료를 위해 9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 받아 지원키로 했음.

(조준형 기자, 2003.02.11. 연합뉴스)

- 19 일 경기도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시찰하고 수용자들을 면담하는 등 실지조사를 진행한 인권위 관계자는 ""상주 의료인력이 의사 1명, 간호사 1명에 불과했다" 고 전했다.

(강성준 기자, 2003.11.21. 인권하루소식)

- 28 일 오후 2 시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소 내 인권유린에 항의하며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소속 이주노동자들이 집회를 열었음. 이들은 보호소 내 단식농성중인 이주노동자에게 7 일이 지난 후에야 의약품을 전달한 보호소 측을 강력히 규탄했음. 현재 보호소에서 이주노동자 17 명 이상이 단식에 동참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나 보호소 측은 이에 대해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들을 포함해 정부의 강제출국 조치에 맞서 여수보호소, 명동성당 등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모두 22명에 이룸.

(김명수 기자, 2004.02.28. 인권하루소식)

- 단식이 장기화되면서 그들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었음. 특히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깨비의 몸무게는 36 kg. 그의 혈당치는 언제든 쇼크가 일어날 수 있을 만큼 떨어져 있었음. 큰 소리로 건너편에 말했음. " 병원에 가야 한다고 얘기해 보셨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그의 표정은 어두웠음. 매 시간 혈당치를 확인해야 할 만큼 깨비의 상태는 위험했지만, 그는 잠깐 의사를 만났을 뿐 병원에 가지 못한 채 ' 형무소' 에 방치되고 있었음. 병원에 보내달라 말하면 " 밥 안 먹으니까 아프지. 그러지 말고 밥 먹어!" 소리를 듣는다 했음. 단식의 힘겨움 탓인지 그 말을 건네는 깨비의 목소리는 걸기가 느껴지긴 했지만 아주 조그마했음.

(임윤희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모임 회원, 2004.03.14. 한겨레신문)

-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21 일 동안 단식 중인 깨비 씨와 굽타 씨, 병원 진료 받아...깨비 씨, 체중 36kg 혈당 43(쇼크사 가능성 높은 상태) 탈수에 장흡착 증세로 병원 입원 요구했으나 무시당해(3.8)

(2004.03.16. 인권하루소식)

- 민주노총 측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한 달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7명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 중 네팔인 사말이 지난 15 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는 등 3명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유신재 기자, 2004.03.17. 한겨레신문)

- 민주노총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가 최근 작성한 '화성 외국인보호소의 인권침해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노동자들은 질병이 생겨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유신재 기자, 2004.03.17. 한겨레신문)

- 화성 외국인보호소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단식을 벌인 깨비, 굽타, 샤말 씨는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지난주부터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보호소 측은 '돈이 없다'는 등의 핑계로 지속적인 치료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

(김명수 기자, 2004.03.19. 인권하루소식)

- 지난 3월 6일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이하 외노협) 소속 회원단체 대표들이 화성외국인보호소장을 면담했던 적이 있음. 그 당시 보호소 내에는 단식 농성 중이던 3명의 이주노동자가 있었음. 외노협에서는 그들에 대한 적절한 의료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를 추궁했었는데, 보호소장은 아무렇지도 않게, "육안 관찰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답변을 하였다고 함. 보호소장의 태도는 눈으로 관찰하다가 쓰러져 죽으면 내보내겠다는 것이나 진배없었음. 이러한 관련 공무원들의 인권 의식은 오히려 교도소가 백 배 낫다고 하는 것이 옳겠음. 또 비슷한 시기에 여수외국인보호소장은 단식 중이던 네팔 이주노동자 샤말 타파를 지지 방문한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어느 나라가 불법체류자에게 먹여주고 재워주느냐"고 오히려 언성을 높이며, 단식농성으로 생명이 위독해진 사람에 대해 단식하다 죽으면 단식한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다는 투로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여 말썽을 일으켰던 적이 있음. 이러한 외국인보호소장들의 인권 수준이 외국인보호소의 인권현실을 여실히 드러내 주는 인권지수이다 보니, 보호소 내 인권 침해나 인권유린 요소에 대한 시정 노력이 있을 리 만무함.

(고기복 기자, 2004.03.22. 오마이뉴스)

(7) 생활

1) 자유시간

- 텔레비전이나 신문이 없음.

(2000.03.11. 인권하루소식 논평)

- 신문을 보지 못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경실련 등 60개 사회단체 성명서, 2000.03.07. 한겨레신문)

* 텔레비전과 오락기구를 설치하기로 함.

(법무부 보호외국인 처우 개선방안, 2000.03.08. 한겨레신문)

* 화성외국인보호소는 텔레비전과 샤워시설, 종교실을 갖추고 있음.

(공병설 기자, 2001.05.07. 연합뉴스)

2) 운동

- 옥외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음.

(2000.03.11. 인권하루소식 논평)

- 운동을 하지 못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경실련 등 60개 사회단체 성명서, 2000.03.07. 한겨레신문)

* 운동시간을 늘리기로 함.

(법무부 보호외국인 처우 개선방안, 2000.03.08. 한겨레신문)

*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체력단련장을 갖추고 있음.

(공병설 기자, 2001.05.07. 연합뉴스)

3) 기타

* 지정된 장소에서의 제한적 흡연을 허용하기로 함.

(법무부 보호외국인 처우 개선방안, 2000.03.08. 연합뉴스)

(8) 면회와 통신 등

- 전화를 사용할 수 없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경실련 등 60개 사회단체 성명서, 2000.03.07. 한겨레신문)

-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산하 화성 외국인보호소 직원이 면회를 신청하려고 간 사람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자행해 충격을 주고 있음. 지난달 31 일 평등노조 이주지부 조합원 등 15 명은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돼 있는 이주노동자 비두, 자말 씨에 대한 특별면회를 신청했음. 이주지부 김선희 투쟁국장에 의하면, 당시 직원 이모(공익요원) 씨는 면회인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던 김현주(대구성서공단 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사업부장)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몇 차례나 가격해 코뼈를 부러뜨렸음. 더구나 현장에 있던 다른 직원들은 이러한 폭력행위를 지켜보기만 했음. 이 사건과 관련해 보호소의 한 관계자는 "이 일은 개인간에 일어난 폭행사건일 뿐이며 당사자들끼리 풀 문제"라며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어떠한 책임도 질 계획이 없다"고 밝혔음. 이에 대해 평등노조 이주연 교선국장은 "보호소장이 사건 발생 직후 가진 항의면담에서 사건일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해 놓고서 지금에 와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개인간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등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음. 이에 이주지부 등 관련단체들은 보호소 측에 △공식 사과 △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재발방지 약속 △김 씨에 대한 보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면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음.

이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음.

(양승훈 기자, 2003.11.07. 인권하루소식)

- 강제 연행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구금하고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아래 보호소)가 인권단체의 면회를 거부, 인권유린의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음. 27일 오전 인권단체이주노동자지원대책위(아래 대책위)는 정부의 집중단속 기간 중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위해 보호소를 방문, 면회를 신청했으나 보호소 측의 거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음. 보호소 측은 직원 10명을 동원하여 보호소 정문을 삼엄하게 지키는 가운데 면회 신청인의 민원실 입장도 막아 섰음. 거듭되는 면회신청 요구에 보호소는 "보호소장의 지시로 오늘은 면회가 안 된다"며 "돌아가라"고 답했음. 대책위의 항의에 보호소는 '보호소의 안전이나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호소장이 면회를 허락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호규칙 30 조를 들이대며 면회를 허용하지 않았음. 대책위 최재훈 활동가는 "담당공무원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면회를 거부하는 것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법규가 문제"라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바라보는 국가나 공무원의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했음. 이어 최 씨는 "외국인 보호소를 사회적 규제나 감시 없이 무방비로 남겨 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면회신청거부에 대해서는 소송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김명수 기자, 2004.02.28. 인권하루소식)

- 지난 금요일인 27일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3개 인권단체에서는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의 인권침해와 보호소 내 이주노동자들의 생활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다녀왔음. 그러나 보호소 측은 그날 오후 보호소 앞에서 한 이주노동자 투쟁 단체의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호소 내 모든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면회를 거부하였음. 보호소의 규칙에는 보호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보호소장이 면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 하지만 그 조항을 집회와 연관 지어 모든 면회를 거부한 것은 보호소장 측의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보호소 내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임이 분명함. 우리는 끝까지 남아 우리가 집회와 관련 없는 인권단체에서 나왔으며, 보호소 쪽에는 면회를 거부할 수 있는 어떠한 정당한 법적 근거도 없음을 주장했으나 보호소 측은 '소장의 명령' 이라는 말만 되풀이하였음. 보호소 측의 이러한 자의적인 면회 거부로 우리를 비롯한 수많은 면회 신청인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음. 특히 며칠 후에 떠나야 한다는, 시누이를 보러 먼 길을 오셨으나 면회를 거부당한 채 돌아서야 했던 러시아 동포 아주머니 한 분, 또 아내를 보러 왔지만 역시 거부당한 채 우리에게 한국에서 당한 억울함을 호소하시던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한 분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음. 화성 외국인보호소장은 이러한 직권남용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들과 인권단체에 공식으로 사과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약속하여야 할 것임.

(김유진, 2004.03.02. 한겨레신문)

보호소행 버스에서 들었던 이야기처럼 그곳은 외국인을 '보호' 하는 곳이 아니라 그들을 '감금' 하는 곳이었음. 면회실에는 양편을 가르는 유리벽만으로 모자랐는지 가느다란 쇠창살이 박혀 있었음. 유리벽 가운데에 조그만 구멍들이 뚫려 있었지만, 크게 소리를 질러야만 우리 목소리가 건너편에 전달되었음.

(임윤희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모임 회원, 2004.03.14. 한겨레신문)

- 보호소 면회 규칙을 보다 보면, 감옥보다 더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보통의 경우 불법체류자라고 불리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하다 출입국 직원들의 단속에 걸릴 경우, 한 명만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일하던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잡히게 됨. 그럴 경우 단속에 걸린 친구가 있는 합법 이주노동자나 공장 관계자들이 면회를 갈 경우 면회 규정상 원치 않는 차별적 행위를 해야 함. 즉 면회인은 일일 1 회에 한해 보호소에 수감된 한 명만을 면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고기복 기자, 2004.03.22. 오마이뉴스)

(9) 안전과 질서유지

1) 가혹행위 등

- 갈비뼈가 부러지는 폭행을 당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경실련 등 60개 사회단체 성명서, 2000.03.07. 한겨레신문)

-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는 14 일 "방글라데시출신 이주노동자 꼬빌씨 등 4 명이 지난달 경기 화성 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비디오촬영에 항의하는 나이지리아 노동자를 집단 폭행하고 전기충격봉으로 허벅지를 가격했다며 외국인보호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꼬빌씨와 비두씨의 경우, 집회를 조직하고 농성했다는 이유로 잡혀와 현재 형사, 행정 소송 등이 진행 중임에도 일시보호해제 조치 없이 70 일 이상 장기 구금돼 의식주 면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남권 기자, 2002.11.14. 연합뉴스)

- 2002 년 11 월 13 일 4 명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은 경기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음. 이들에 따르면, 화성 외국인보호소는 2002 년 10 월 당사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비디오를 강제 촬영했고, 이에 항의하던 나이지리아인 풀 씨를 독방에 강제 수용했음. 또 이들은 보호소 직원들의 폭언을 한 것 역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애초 이 사건을 맡았던 제 3 소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비디오를 촬영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법률이 아닌 '외국인보호규칙'으로 피보호자를 독방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전원위원회로 결정을 이관했음. 한편 보호소 직원들의 폭언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자료가 없어 기각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 사안을 다루는 인권위의 자세에는 몇 가지 아쉬움이 발견된다. 우선 진정이 제기된 지 무려 8 개월에 이른 지금까지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임.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 이란주 사무국장은 "인권위가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보호 돼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장기간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며 외국인보호소 내 진정사건에 대한 빠른 대응을 주문했음. 나아가 인권위는 이 사건의 처리에 멈추지 말고, 이 참에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실태에 관한 심층적인 조사를 벌여 포괄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아야 함. 지난 2 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인권위가 내놓은 정책권고에는 외국인보호소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었음. 대개의 다수인 수용시설이 그러하듯,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수준이 열악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인권위가 적극 나서야 함. 아울러 보호소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장기 구금에 따른 인권침해 시비는 대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추방정책으로부터 비롯되는 것들임. 따라서 인권위가 이주노동자 강제 추방정책에 대해서도 인권적 판단을 내놓을 것을 기대 해 봄.

(배경내, 2003.07.10.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5일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수용 중인 외국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캠코더로 촬영한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화성외국인보호소장에게 캠코더 촬영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고 관련 직원에게도 특별인권교육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점호시간에 외국인들이 불참하는 사례가 많고 도박, 싸움 등이 잦아 증거확보를 위해 촬영했다고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이 해명했지만 조사결과 작년 10월 7~9일 아침, 저녁 인원점검 시간에 외국인들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네 차례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관련 직원들은 작년 10월 7일 이후 질서를 문란케 할 만한 사건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았고 10월 7일 캠코더를 배정 받은 뒤 시험 삼아 보호 중인 외국인들을 촬영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외국인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촬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이는 개인의 초상권 등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말했다.

(2003.07.15. 연합뉴스)

-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 수용중인 이주 노동자들이 24 시간 동안 감시카메라의 감시를 받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음. 외국인 노동자 70여명이 수용돼 있는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감시카메라 한대가 180도 회전하면서 24 시간 동안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있음.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김익환 소장은 이에 대해 "노동자들이 혹시 자해행위를 할 것을 우려해 감시카메라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곳에 수용돼있는 노동자들은 혹시 몸이 아파 병원에 갈 때도 수갑을 찬 채 이동해야 하는 등 형사범 취급을 받고 있음. 한편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김익환 소장은 감시카메라 때문에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감시카메라를 창문 쪽으로만 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영호 기자, 2004.03.11. CBS전남방송)

- 민주노총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가 최근 작성한 ' 화성 외국인보호소의 인권침해에 대한 보고서' 를 보면,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노동자들은 폐쇄회로티브이(CCTV)로 감시 당하고 있음.

(유신재 기자, 2004.03.17. 한겨레신문)

2) 자해행위 방지

- 최광범(중국동포, 32세)가 스스로 자신의 배를 면도칼로 그어 20여 바늘을 꿰매는 증상을 입음.

(손원재 기자, 2000.03.07. 한겨레신문)

3) 도주 방지

- 27일 오전 1시경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외국인보호소에서 불법체류 등의 이유로 강제출국 대기중인 외국인 11명이 창살을 자르고 탈주했음. 탈주 당시 보호소 직원과 경비용역업체 직원 등 20명이 근무 중이었으며 진 씨 등이 달아난 복도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음.

(최찬홍 기자, 2003.09.27. 연합뉴스)

- 탈주 동기가 정확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번 사건은 보호소의 처우에 불만을 품은 수용자들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일단 추정되고 있음. 보호소 내 처우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다 보면 통제불능 수준까지 증폭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외국인보호소는 그간 수용자에 대한 구타 및 가혹행위 논란에 끊임없이 시달려왔음. 보호소 내 소란, 난동 등을 사유로 한 계구 사용이나 독방 수용 및 음식, 운동, 숙박 등 처우 등에 대한 수용자들의 불만이 있었음. 한때 한국인 불법체류자들에게 악명이 높았던 과거 일본의 오무라 수용소를 둘러싼 논란이 이제는 우리 땅에서 다른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통해 재연되고 있는 셈임. 외국인보호소를 무단 이탈한 수용자에 대한 처벌 법규가 마련되지 않은 것은 탈주 사태를 부추길 수 있는 제도적 맹점으로 거론되고 있음.

(조계창 기자, 2003.09.28. 연합뉴스)

- 화성 외국인보호소 관계자는 보호소 내 처우에 대한 불만을 탈주사유로 꼽고 있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을 강력 부인하면서 "오늘밤부터 자세한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강제퇴거 후 재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탈주하지 않았겠느냐"고 추정했음. 법무부 출국관리과 관계자도 "우리 외국인보호소의 처우 수준은 주변국들에 비해 훨씬 양호한 편"이라며 처우에 대한 불만이 사유일 가능성을 부인했음.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지부는 의견을 달리했음. 이주지부의 서선영 씨는 "외국인보호소는 오랫동안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처럼 다루며 폭행, 폭언을 일삼아왔고, 징벌 목적의 독방 수용이나 열악한 처우 등이 문제가 되어 왔다. 최근 개선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음.

(배경내, 2003.09.30. 인권하루소식)

(10) 강제퇴거절차 등

1) 적법 절차

- 강제퇴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흔함. 지난해 11월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가 국가인권위 용역사업으로 수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심층면접에 응한 14명의 보호소 수용자 중 대다수는 강제퇴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보호소 내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절차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음.

(배경내 기자, 2003.09.30. 인권하루소식)

- 민주노총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가 최근 작성한 '화성 외국인보호소의 인권침해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강제퇴거 명령서와 이의신청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등이 영어와 한글로만 작성돼 있어 외국인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음.

(유신재, 2004.03.17. 한겨레신문)

- 제 60 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한국정부가 이주노동자 정책을 자화자찬하는 낯뜨거운 일이 벌어졌음. 22 일 의제 6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와 모든 형태의 차별'을 다룬 회의에서 홍종기 제네바 대표부 차석대사가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 차별철폐를 위한 조치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 이날 홍 차석대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률구제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자신 있게 뽐내기도 했음. 그러나 평등노조 이주지부 서선영 선전국장의 말은 다름. 서 국장은 "지난해 10 월 26 일 표적 연행된 이주노동자 두 명에게 경찰이 수갑을 채운 채로 물을 먹이고, 집단 폭행한 진정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피해 이주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차례의 조사도 없이 기각결정을 내렸다"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식의 발언은 현실을 호도한 것"이라고 비판했음. 당시 두 명의 이주노동자는 인권위 결정 직후 기각결정 통보도 받지 못한 채 강제출국 당했음. 실제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출국 단속 과정이나 외국인보호소 내에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들 중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드물. 이금연 대표는 "여수 출입국관리소는 최근 수용된 샤벌 타파 씨의 항의가 있기 전까지 인권위 진정절차에 관한 안내문 하나 제공하지 않았다"며, "수많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인권유린을 당하고도 구제 받지 못한 채 강제출국 되고 있다"고 말함.

(허혜영 기자, 2004.03.24. 인권하루소식)

2) 강제퇴거 유예 등

-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강제퇴거를 당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경실련 등 60개 사회단체 성명서, 2000.03.07. 한겨레신문)

*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중인 외국인들 중에서 체불임금이나 채권과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일정 심사를 거쳐 보호조치가 일시 해제돼 소송이 끝날 때까지 강제추방을 유보하기로 함.

(법무부 보호외국인 처우 개선방안, 2000.03.08. 연합뉴스)

* 소송 제기자가 아니더라도 심사를 통해 영수증이나 차용증 등 근거가 있을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이나 빌려준 돈을 받을 때까지 강제출국을 유보하기로 함.

(법무부 보호외국인 처우 개선방안, 2000.03.08. 한겨레신문)

- 최근 내국인 고용주와 체불임금 등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수용자들의 강제출국 유예가 늘고 있음.

(조계창 기자, 2003.09.28. 연합뉴스)

* 법무부는 이와 함께 적발된 불법체류자 중 임금체불, 산재, 소송 등 사유로 당장 출국시키기 어려운 이들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 가급적 문제를 해결토록 해준 뒤 출국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주호 기자, 2003.11.16. 연합뉴스)

3) 강제퇴거 취소 등

- 강제퇴거조치를 앞두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대기중인 꼬빌씨 등 방글라데시인 2명은 26일 "외국인 보호소 내 보호조치 및 강제 퇴거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출입국관리소를 상대로 보호일시해제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음. 이들은 소장에서 "출입국관리소가 불법체류를 이유로 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조치와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다"며 "이같은 조치는 형식적 이유일 뿐 실제로는 명동성당농성 등 이주노동자 인권활동을 문제 삼은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음. 이들은 또 "외국인차별에 대한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에 진정, 조사가 진행 중이고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소송도 계류 중"이라며 일시보호해제 거부처분 및 강제퇴거명령의 취소를 요구했음.

(이귀원 기자, 2002.09.26. 연합뉴스)

-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2일 새벽 6시 비두, 꼬빌 씨의 집에 들어가, 자고 있던 이주노동자 14명을 차로 끌고 갔음. 조사 후 나머지 12명은 풀려나고 비두, 꼬빌 씨만 출입국사무소로 연행돼, 곧바로 화성 외국인보호소로 넘겨졌음. 급기야 5일에는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두, 꼬빌 씨의 서명도 없이 여권을 새로 만들고, 비행기표까지 마련해 강제 출국시키려 했음.

(이풍은나 기자, 2002.09.26. 인권하루소식)

-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조합원인 꼬빌 씨와 방글라데시 노동자 공동체에서 활동 중인 비두 씨는 지난달 2일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 의해 연행됐음.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수감 중인 이들은 연행된 지 3일만인, 9월 5일 방글라데시 행 비행기를 탈 뻔했음. 그러나 출입국관리소 측이 본인들 직접 서명하지 않은 여행자증명서를 위조했음이 드러나 가까스로 강제출국은 모면했음. 이에 대해 꼬빌과 비두 씨는 서울출입국관리소 소장 등을 재량권 남용 및 공문서 손괴 및 위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음. 또한 집회결사의 자유 및 노조결성과 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상태임.

(고근예 기자, 2002.10.09. 인권하루소식)

-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인 꼬빌 씨 등 2명은 13일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강제추방조치를 당했다"며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일시해제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음.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 4월부터 70여 일간 서울 명동성당에서 이주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요구하는 농성을 했다는 이유로 연행돼 강제퇴거조치 됐다"며 "이는 집회의 권리를 인정한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음.

(2002.11.13. 연합뉴스)

* 지난 95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귀순요청이 거부돼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한 밀입국 탈북자가 7년을 끈 재판에서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승소했음. 서울고법은 3일 탈북자 김모씨가 화성 외국인 보호소를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처분 등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호소가 수용자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내릴 때 명령의 취지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강제퇴거 명령서를 발부하도록 한 법규를 어기고 원고에게 퇴거명령을 구두로만 통보, 원고가 이의신청 등을 통해 불복할 기회를 박탈한 만큼 피고가 내린 명령은 무효"라고 밝혔다.

(2003.01.03. 연합뉴스)

- 김씨의 대리인 안상운 변호사는 "김씨는 승소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7년 동안 힘겹게 살아왔다"며 "재판부는 2000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행정절차를 이유로 승소판결을 내리는데 2년이나 걸렸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김씨는 95년 수용된 지 6개월여 만에 일시 석방돼 최근까지 수도권 동지에서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2003.01.03. 연합뉴스)

- 명동성당에서 46일째 농성 중인 불법체류외국인 노동자들은 31일 거센 항의 집회로 한 해를 침울하게 마감했다. 이날 외국인 노동자 60여명은 이날 오후 1시경부터 2시간 동안 서울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전날 방글라데시인 2명을 갑자기 강제 출국시킨 법무부 조치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출입국관리소 측이 불법체류자라는 점 때문에 전격 연행할 것에 대비, 민주노총 조합원 30여명의 '보호' 아래 집회를 진행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전날 강제 출국된 방글라데시인 자말 씨는 합법체류자라고 밝혔다. 비두씨의 경우 불법체류자이지만 10월 비정규직노동자대회에서 경찰에 폭행당한 뒤 국가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출국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지부의 한 관계자는 "폭력 연행 뒤 진정과 고소로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기초 조사마저 거치지 않고 피해 당사자들을 강제 출국시킨 것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10월 26일 집회 중 연행된 뒤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머물다가 지난 5일 여수 출입국관리소 관내 보호소로 이송된 뒤 30일 오전 8시 대한항공 편으로 강제 출국됐다.

(이광희, 안희 기자, 2003.12.31. 연합뉴스)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지난 10월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 경찰에 연행돼 강제추방명령이 내려진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 B(30·경기 마석)과 C(17·경기 마석) 등 2명을 지난달 30일 무리하게 강제 추방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음. B은 지난 1996년에 입국해 체류기간이 4년을 넘어 불법체류 상태였지만, C은 2001년에 입국해 취업확인서와 비자 등을 모두 갖춘 합법체류자 신분이어서 집회 참석에 대한 '패시프'가 적용된 강제추방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임. 이들은 지난해 10월 26일 노동자대회 도중 경찰에 연행된 뒤, 강제추방명령이 내려져 다음날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넘겨졌음. 이들은 외국인보호소에 있으면서 민주노총 평등노조이주노동자지부 관계자들과 만나 연행 도중 경찰에 폭행 당한 것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했음. 이들은 노동자대회 때 경찰에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11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고, 같은 달 15일엔 국가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음. 하지만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은 11월 28일 갑자기 이들을 전남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보냈고, 이들은 지난달 29일야 화성외국인보호소 쪽으로 돌아왔다가 다음날 오전 8시 50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방글라데시로 강제 추방됐음. 서선영 민주노총 평등노조이주노동자지부 선전국장은 "방글라데시 노동자 2명 중 1명이 비록 불법체류신분이었지만, '임금·인권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강제추방을 유보한다'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지침을 정부 스스로 어긴 셈"이며 "노동자대회 참석에 대한 보복성

강제추방"이라고 주장했음. 이에 대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경찰이 시위현장에서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단속했기 때문에 강제 추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음.

(김영인 기자, 2003.12.31. 한겨레신문)

- 법무부가 단식 16일을 넘긴 이주노동자를 강제로 비행기에 태워 쫓아 버렸음. 3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연행 이주노동자들의 석방과 강제추방 중단을 요구하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단식 중이던 바라쉬, 다아, 몽크, 초아 등 4명의 몽골인 이주노동자를 본국으로 강제출국 시켰음. 강제추방저지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쟁취를 위한 농성단(아래 농성단)에 따르면 단식농성 16일째였던 바라쉬 씨는 각혈과 하혈로 치료가 절실했으며, 나머지 3명의 이주노동자 역시 단식농성 12일째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임. 그러나 신원을 밝히기 거부한 화성외국인보호소의 한 직원은 "(10여 일째 단식을 한 이주노동자들이) 오늘 아침에도 펄펄 날아 다녔고 아무 이상 없다"며 "출국에 이상이 없으니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음. 이에 농성단 쏜나 씨는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을 3번이나 한 바라쉬 씨는 단식 중에도 각혈과 하혈로 건강이 몹시 좋지 않았다"고 전하며 "10일 이상 단식을 했고, 그동안 제대로 된 치료도 하지 않았으면서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고 비난했음. 쏜나 씨는 "보호소 내에서 농성과 이주노동자의 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단식 중인 이주노동자를 무리하게 끌어내 강제출국 시킨 것"이라며 법무부의 야만적인 처사에 분개했음. 그러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이동권 계장은 "이미 2002년부터 몇 차례 자진 출국하라고 해왔지만, 계속 거부하며 불법적으로 남아 있던 것 아니냐"며 "이번 단식 농성자들의 출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근예, 2004.03.04. 인권하루소식)

- 깨비와 굽다의 고국 내팔은 현재 내전중임. 내팔 정부는 군인이건 민간인이건 빨갱이 딱지가 붙은 사람은 가릴 것 없이 사살하고 있음. 한때의 한국처럼 말임. 한국 정부가 그들을 강제 추방시키면, 그들의 목숨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음.

(임윤희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모임 회원, 2004.03.14. 한겨레신문)

-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난 3일에는 단식 16일째이던 몽골인 2명이 강제 추방됐으며, 각혈하고 있는 노동자들 그냥 비행기에 태워 추방시킨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신재 기자, 2004.03.17. 한겨레신문)

4) 장기 구금

*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재중국 동포(조선족)의 경우 중국측의 여행증명서 발급 지연으로 출국이 지연되는 점을 감안, 중국측의 협조를 얻어 여행증명서 발급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키로 함.

(법무부 보호외국인 처우 개선방안, 2000.03.08. 연합뉴스)

- 일자리 없이 갇힌 노동자는, 친구나 본국에서 교통비를 지불해주지 않는 한, 몇 달이고 구금되기도 함.

(심보선 기자, 2001.07.05. 인권하루소식)

- 31 일, 이주노동자 4 명이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음. 이들은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소속 조합원 비두(30), 꼬빌(30)씨와 나이지리아 노동자 포올(23), 러시아 노동자 몬수로프(35)씨로 △보호소 내 장기구금, 인권침해 중단 △단속주방 전면 중단 △산업연수제 철폐 △노동 3 권 보장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음. 현재 비두 씨와 꼬빌 씨는 자유로운 노조활동 보장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놓은 상태이며, 출입국관리소의 공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형사소송,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소송 등을 진행중임. 그러나 이들은 '일시 보호해제' 신청이 기각돼, 두 달 넘게 보호소에 갇혀 있음. 포올 씨는 폭행을 저지르는 한국인을 경찰에 신고했다가 오히려 출입국관리소로 넘겨져 보호소에 갇힌 지 3 개월이 넘었음. 몬수로프 씨 역시 보호소에서 4 개월 넘게 살고 있음.

(고근예 기자, 2002.11.01. 인권하루소식)

- 2002 년 11 월 13 일 4 명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은 경기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음. 이들은 짧게는 73 일, 길게는 4 개월 이상 보호소에 '장기 구금'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음. 장기구금에 대해서 '임금체불 등에 따른 소송이나 구제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퇴거시키지 않는 것은 진정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들을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의 문제는 국회입법사항이므로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전망이다. 인권위가 독방 격리수용 규정을 '규칙'에 두어야 하느냐, '법률'에 두어야 하느냐의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쉬움. 독방에 수용될 경우 면회나 독서, 운동이 금지되는 등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이 이루어지게 됨. 따라서 인권위는 규칙이나 법률이냐의 문제를 넘어 독방 수용의 요건과 제한조치의 타당성을 함께 검토해 관련 법령의 시정을 권고해야 할 것임.

(배경내, 2003.07.10. 인권하루소식)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 이들의 소송이 끝날 때까지 구금을 할 수밖에 없다" 며 " 사는 곳이 일정치 않아 일시보호해제 조치를 해주기 어렵다" 고 밝혔음.

(김순배 기자, 2002.11.13. 한겨레신문)

*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이주노동자 합법화 등을 요구하며 21 일 간 단식을 했던 이주노동자 비두와 꼬빌 씨가 21 일 풀려났음. 일단 내년 1 월 20 일까지를 기한으로 보호일시 해제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임.

(2002.11.21. 인권하루소식)

- 최근에는 강제출국에 앞선 대기 장소인 외국인보호소에서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강요하는 '장기구금' 문제가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음.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가운데 즉시 송환이 불가능할 경우 무기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임금체불이나 여행자 증명원 발급 등의 문제로 즉시 송환이 어려운 외국인들이 장기간 구금되는 경우가 흔함. 이번에 탈주했다 검거된 방글라데시인 찬드라센 씨도 5 월 19 일 보호소에 입소, 임금체불 문제로 4 개월이 넘게 수용돼 있었음. 이주지부의 꼬빌, 비두 씨 역시 지난해 9 월초 출입국관리소의 '표적단속'에 걸려 보호소에 수용됐다 21 일간 단식농성과 국가인권위 진정을 거쳐 석 달 가량 만에 일시 보호해제돼 풀려난 바 있음. 서 씨는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당장 출국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조치를 해체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보호소 측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사업주와 타협을 보게 한 다음 출국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도임 정귀순 대표도 "보호소 측이 일시 보호해제를 적극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장기구급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배경내, 2003.09.30. 인권하루소식)

* 법무부는 단속에서 적발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된 외국인을 최대한 빨리 출국시킨다는 방침 아래 여권과 항공권이 확보된 외국인은 즉시 퇴거시키고, 여권 등이 없으면 즉시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 퇴거시키기로 했다. 자진출국 기한이 끝났더라도 자진출국을 원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당일 항공권을 소지하고 공항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한해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범칙금 처분 없이 출국할 수 있다.

(정주호 기자, 2003.11.16. 연합뉴스)

5) 법적 지원

* 사기피해를 입은 보호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 후 재입국을 보장하고 체불임금 등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 자원봉사 변호사, 근로감독관 등을 통해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기로 함.

(법무부 보호외국인 처우 개선방안, 2000.03.08. 연합뉴스)

* 노동부는 외국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강제출국 대상자가 출국일 이전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가 체불민원을 제기했을 때에는 우선 처리해 주기로 했음.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특별감독이 실시됨. 노동부는 또한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돼 있을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외국인 보호소로 출석하도록 해 근로감독관 조사를 거쳐 체불임금이 조기에 청산되도록 할 방침임. 노동부는 이밖에 임금을 받기 전에 강제 출국 조치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사후 송금체제를 갖추기로 했음. 강제 출국 대상자는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체불임금 내역과 계좌번호를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조치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에게 송금한 뒤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임. 노동부는 기한 내에 송금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제능력이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기로 했음.

(2003.11.16. 연합뉴스)

* 수원지검은 '외국인근로자 권익침해 합동대책반'을 편성, 임금 체불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업체 대표 1 명을 구속하고 4 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 중이라고 23 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합동대책반 집중단속 결과 한달 동안 수원, 안양, 성남, 안산 등 수원지검 관할 외국인 근로자 650 명의 체불임금 11 억 원을 청산, 이 지역 외국인근로자체불임금을 30 억 원에서 19 억 원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인권침해로 국가이미지가 손상되자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수원지검 관할부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16 일 노동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련 기관과 합동대책반을 편성해 운영중임. 검찰에 따르면 합동대책반은 화성시 봉담읍 사출성형제조업체 대표 남모(47)씨를 방글라데시 근로자 6 명의 임금과 퇴직금 3 천 800 만원을 체불하고 근로자 1 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했음. 대책반은 또 몽골근로자 4 명의

외국인등록증을 압류한 뒤 불법체류를 빌미로 임금포기를 강요한 혐의로 화성시 실크인쇄업체 대표 양모(46)씨 등 달아난 회사 대표 4 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중임. 대책반은 불법체류로 검거돼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용중인 중국인 근로자 2 명이 화성시 모수련원에서 받지 못한 임금 970 만원을 받아 출국하게 하는 등 외국인보호소 수용 근로자 13 명의 체불임금 2 천 500 여만 원을 출국 전 청산했음. 합동대책반은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 1 명을 배치, 강제출국을 앞둔 외국인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인권침해 사례를 상담해 즉시 해결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수원지검 김준규(金陵圭) 1 차장검사는 "합동대책반 편성은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 처벌뿐 아니라 권익도 적극적으로 보호해 법 집행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사라지대로 남아있던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를 처음으로 체계화 시켰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음.

(박두호 기자, 2004.03.23. 연합뉴스)

* 수원지검의 '외국인근로자 권익침해 합동대책반'운영은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간 시스템을 처음 체계화했다는데 의미가 있음. 수원지검은 지난달 16 일 수원.안양.성남.안산지방노동사무소, 화성외국인보호소,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함께 '외국인근로자 권익침해 합동대책반'을 편성했음. 합동대책반의 우선 목표는 체불임금 청산에 두고 관련 기관 21 명으로 구성된 대책반이 기관별 기능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수시로 개최, 처음 가동하는 시스템의 활동을 정착시켜 나갔음. 불법체류로 검거된 외국인을 출국 전 보호하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는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 1 명을 고정 배치, 강제출국 문턱에서 상담을 통해 억울한 사연을 해결해주는 제도도 도입했음. 검찰은 전담 수사반으로 하여금 임금체불 사범에 대한 신속, 엄정한 수사를 하는 한편 체불임금 청산을 적극 유도했음.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등 3 천 800 여만원을 지급치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사무소가 송치한 기업체 대표를 즉각 구속하자 대표는 4 일 뒤 체불임금전액을 지불했다. 외국인등록증을 빼앗아 받을 뉘는 뒤 불법 체류사실을 빌미로 임금 포기를 강요한 업주 등 4 명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하며 체불임금 청산을 압박하고 있음. 노동사무소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 공소시효 경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기업체 대표는 검찰이 설득해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했고,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을 이미 받은 기업주도 설득, 출국을 못하고 있던 조선족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토록 해 고향으로 돌려보냈음. 합동대책반 구성은 전국 외국인 근로자 2 천 200 명에 대한 체불임금 47 억 원 가운데 수원지검과 산하 지청 관할지역이 60%를 넘는 30 억 원을 차지, 수원지검 관할부터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판단에서 비롯됐음. 그동안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불법체류 처벌에 치중한 면이 없지 않아 이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 법 집행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의지도 포함됐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일부 기업주들이 불법체류라는 약점을 이용해 임금을 때어먹고 인권을 침해, 국제적으로 한국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되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임.

(박두호, 2004.03.23. 연합뉴스)

6) 강제퇴거 비용

* 출국비용을 자비로 부담할 수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비용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국비로 충당하기로 함.

(법무부 보호외국인 처우 개선방안, 2000.03.08. 연합뉴스)

- 강제퇴거 비용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내는 것이 보통임.

(심보선 기자, 2001.07.05. 인권하루소식)

(11) 언어 문제

- 외국인들은 언어적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에도 문화적 이질성까지 겹쳐 집단 수용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높은 편임.

(조계창 기자, 2003.09.28. 연합뉴스)

(12) 난민 문제

- 9·11 미국 테러사태 이후 정부가 난민인정 신청을 한 외국인들을 감금·추방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난민 보호에 역행하고 있음. 아랍계 체류자 등이 난민인정 신청을 했음에도 미국 테러사태 이후 불법체류를 이유로 체포돼 외국인보호소에 감금되거나 추방당하고 있음. 근거가 빈약한 난민인정 신청이라는 이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접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며, 실질적 난민심사가 이뤄져야 함. 난민인정 신청을 한 이란인 5명과 아프가니스탄인 2명이 테러사태 이후 체포돼 2명이 추방되고 5명이 감금(보호조치)되었으며 또 난민인정 신청이 기각됐으나 출국 기한이 한달 남짓 남은 아프가니스탄인이 체포된 사례도 있음. 한편, 난민 신청을 한 이란인이 본국에서의 구금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지난달 16일 추방된 사례가 발생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서울연락사무소가 법무부에 유감을 표시하였음.

(민변 기자간담회, 2001.11.07. 한겨레신문)

- 아프간 및 아랍계 난민신청인들에 대한 보호조치와 추방은 '뉴욕테러'와 '아프간 사태' 이후 취해진 것이며, 이러한 단속이 아랍계 사람들에게만 두드러진 현상은 "분명한 인종차별"임. 난민신청자를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구금한 경우, 난민협약에는 '불법적으로 자국 영역 내에 입국하고 또 는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에게 형벌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됨. 한편 일반적으로 박해를 피해 탈출해온 난민에게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서류를 모두 갖추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음. 난민의 지위를 인정 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들에게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써 난민의 인정여부는 심사과정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난민인정신청 자체를 거부할 문제는 아니며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단지 출입국 차원의 문제 혹은 단속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행정관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민변 기자간담회, 2001.11.07. 인권운동사랑방)

* 법무부는 "추방된 이란인은 돈을 벌기 위해 불법 체류했다고 시인해 조치한 것"이라며 "법무부는 정치·종교 등의 이유에 따른 난민임을 주장하면 난민 심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함.

(이본영 기자, 2001.11.07. 한겨레신문)

* 법무부 체류심사과 김 OO 계장은 이번 사건이 인종차별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함. 그는 “이들은 신분증도 여권도 없고 신원도 밝히지 않았다”면서, 신원이 확실치 않은 이들의 난민신청을 접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 김 계장은 또 이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신원이 확실치 않은 데다 돈을 벌 목적으로 한국에 장기 체류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보호조치를 하게 됐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음.

(범용 기자, 2001.11.08. 인권하루소식)

* 법무부는 최근 난민지위를 받은 외국인 6명을 비롯, 국내 난민지위 신청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예산 1천만원을 확보, 각 지역 출입국관리국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고 11일 밝혔음. 난민 또는 난민 신청자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은 이번이 처음으로 난민 지위신청을 낸 외국인은 현재 7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형 기자, 2002.02.11. 연합뉴스)

(14)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연말까지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음. 국가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에서 자진신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보호처분과 강제퇴거 명령의 결정 및 집행과정, 보호시설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임. 이번 방문조사는 인권위 상임, 비상임위원과 학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지며 내년 3월초께 보고서를 통해 조사결과가 발표됨.

(김남권 기자, 2002.11.19. 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9일 경기도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실태를 조사했음. 인권위는 최근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단속하고 있으나 보호시설의 수용공간이 부족해 과밀수용에 따른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이번 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보호처분과 강제퇴거명령의 결정 및 집행과정 △외국인보호소 수용공간과 운영실태 △수용중인 외국인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한 뒤, 이달 안에 개선점을 찾아내 법무부에 권고할 예정임.

(황준범 기자, 2003.11.19. 한겨레신문)

(13) 기타

* 법무부는 인권·시민단체와의 상시 대화창구를 운영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책을 마련하기로 함.

(외국인 근로자 인권대책 전문위원회, 2001.07.11. 한겨레신문)

외국인보호(수용)제도의 제문제

1. 외국인보호의 법적 성격

외국인보호의 법적 성격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행정상 직접강제임. 직접강제란 의무자가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직접적으로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임.

2. 외국인보호의 법적 근거상의 문제점

직접강제도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이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출입국관리법 제3절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보호, 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보호명령서의 집행, 보호의 통지,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외국인의 일시 보호, 피보호자의 처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5절 제63조에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보호 및 보호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6절 제65조부터 제66조까지 보호의 일시 해제, 보호 일시 해제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출입국관리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보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개념규정이 없고, 피보호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실력 행사라는 '보호'의 실질적 내용, 즉 피보호자의 기본권 제한의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이를 법무부령에 포괄 위임하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음. 이는 거의 유사한 형식의 주거 및 신체의 자유의 제한을 의미하는 구금 형의 집행내용에 관하여 행형법에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됨.

3. 외국인보호의 규정상의 문제점

직접강제는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 중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크게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강제집행수단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되어야 함. 또한 직접강제는 비례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보다 엄격한 절차법적 실체법적 통제가 가해져야 함. 특히 주거의 자유 또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직접강제의 경우에는 적법절차의 원칙상 영장주의의 적용여부가 검토되어야 함. 비록 헌법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인에게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실체적, 절차적 보장, 종교의 자유, 예술, 학문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등은 적극적으로, 재산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환경권, 보건권, 노동3권 등은 제한적으로 헌법상 보장됨. 외국인보호의 내용은 법무부령인 외국인보호규칙, 법무부훈령인 동 규칙 시행세칙 및 법무부령인 보호외국인의의류및침구의제식에관한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바, 외국인보호는 외국인이 제46조 제1항 각호의 1(강제퇴거의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어 보호하는 경우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어 보호하는 경우 모두 강제퇴거의 심사나 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한 신병 확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주거 혹은 신체의 자유의 제한에 그쳐야 하며,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징벌이나 교정교화의 목적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그런데, 외국인보호에 관한 출입국관리법 제57조(피보호자의 처우)의 법률유보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배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한 신병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보호의 내용을 규정한 규칙 등이 징벌이나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구금형의 내용을 규정한 행형법이나 동법

시행령보다도 질적 양적으로 강한 기본권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1) 목적 : 외국인보호규칙은 외국인의 '보호'의 의미나 기본권 제한과의 관계를 밝히는 어떠한 내용도 없이 외국인의 '적절한 처우'를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그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행형법은 기본권의 제한의 근거가 되는 행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2) 처우의 원칙 : 외국인보호규칙은 '보호소의 안전과 그밖에 보호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을 기본권 보장의 한계로 규정하여 보호소의 관리의 관점에서 외국인 처우에 접근함에 반하여, 행형법은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을 수용의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음.

(3) 보호장소 : 출입국관리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이 보호장소로 '구치소, 교도소' 등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신병확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에 대하여 그 목적을 망각한 채 보호외국인을 형사범인 수형자와 구별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입법임.

(4) 보호기간 :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제46조 제1항 각호의 1(강제퇴거의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어 강제퇴거심사를 위하여 보호하는 경우는 10일(1차 10일에 한하여 연장 가능함)의 보호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어떠한 보충해석규정도 없음)에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무기한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있음.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 주거의 자유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본질적 내용침해금지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5) 고지사항 : 외국인보호규칙은 보호외국인에게 '보호소의 생활규칙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여 주로 규율과 관련한 사항의 고지만을 예정하고 있으나 행형법은 수용자에게 접견 및 서신, 청원 등 수용자의 기본적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6) 수용 : 외국인보호규칙은 혼거수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행형법은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음. 보호외국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독립적인 생활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규정함이 바람직함.

(7) 면회 : 외국인보호규칙의 경우 보호명령만을 받은 자와 강제퇴거명령도 받은 자, 일반인과 변호인을 구별하지 않고 면회를 보호소장의 재량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특히 일반인의 경우에는 재량허가조차도 보호외국인과의 관계, 면회사유 등을 고려하여 '보호소의 안전이나 질서유지 또는 보호외국인의 건강이나 위생'에 '지장'이 없는 때 준수사항'을 정하여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뿐만 아니라 '보안상의 이유'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일반면회와 특별면회를 불문하고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면회금지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강제퇴거(심사)를 위한 신병의 확보라는 보호목적에도 어긋나며 접견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행형법과 비교하여보아도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판단됨.

(8) 청원 : 외국인보호규칙은 법무부장관과 보호소장에 대한 청원을 단순히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행형법령은 소장과의 면담(신청 시 필요적임)과 제3자(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을 철저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교도소장 이하 교도소 내 공무원의 청원의 내용에 대한 접근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음. 또한 '보안상의 이유'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서 '보호소 안'에서의 '자신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한정하고 '공동청원', '다른 외국인에 대한 사항', '막

연한 희망사항', '감정적인 의견' 등에 대한 청원을 금지하여 그 범위가 과도하게 제한적이고 그 내용이 지극히 추상적이며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검열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9) 생활 : 강제퇴거의 심사나 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한 신병 확보라는 보호의 목적과 공동생활을 위한 질서유지 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와 신체의 자유의 제한을 제외하고는 보호외국인에게는 최대한의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되어야 함. 이는 '자유시간의 기회 보장'이라는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위 보호목적 등에 근거한 '최대한의 자유로운 생활 보장'의 원칙을 천명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10) 계구 사용 : 신체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직접적인 실력 행사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제한하는 계구의 사용에 있어서 외국인보호규칙은 행형법령과는 달리, 계구의 종류를 특정하고 있지 않고('그밖에 보호외국인의 계구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구'), 보호소장의 명령이 전제되지 않는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한 사용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징벌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 및 계구의 사용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어떠한 규정도 하고 있지 아니함. 한편, 행형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제18회 법무부정책위원회에서 수용자에 대한 계구사용에 관한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의결함. 이 의결안에서는 기존에 훈령으로 되어있던 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등에관한규칙을 법무부령으로 격상하여 제정하기로 하고, 동 규칙에 계구의 현대화, 계구사용 요건의 엄격화 및 구체화 등을 규정함.

(11) 격리 수용 : 외국인보호규칙상의 격리 수용이 단순한 독거수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인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이를 행형법상의 가장 중한 징벌인 금치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까닭 없이 단식을 한 때' 등 부적절한 요건을 포함하고 있고, 그 기간이나('보호소장이' '기간을 정하여') 격리 수용의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 비례성의 원칙, 의무관의 건강 진단 등 행형법령에서조차도 보장하고 그 어떠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한편, 행형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제17회 법무부정책위원회에서 수용자 징벌제도를 개선하기로 의결함. 이 의결안에서는 징벌대상행위 축소, 징벌 요건 및 절차적 기본권 강화, 금치기간의 축소 및 연속 금치 제한, 징벌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징벌실효제도 도입 등을 결정함.

(12) 언어 문제 : 한국인들이 감시, 감독하는 외국인들의 고립된 생활시설이므로 언어상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의사소통이 되지 않거나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입게 될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보호외국인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음.

(13) 시행세칙의 대외비 문제 :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법무부 훈령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규정하고 있고 이 내용은 '보안상의 이유' 외부에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아니하는 바 법령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오히려 번역 등을 통하여 보호외국인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임. 기본권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규정들이 대외비라면 일반인이 알 수 없는 기준들에 근거하여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내용과 형식으로 기본권, 인권을 제한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행형법령보다도 더 심각한 피구금자의 기본권 제한 근거를 숨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 규정 내용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떠나 비공개 행위자체만으로도 헌법상 기본권 보장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

4. 외국인보호의 실태상의 문제점

(1) 처우의 원칙 : 외국인보호의 경우 강제퇴거의 심사나 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한 신병 확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주거 혹은 신체의 자유의 제한에 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보호소를 감옥이라고 생각함.

(2) 단속, 보호절차 :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보호외국인 상당수가 보호명령서를 본 적이 없거나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했고, 단속대상이 아님에도 신원확인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 연행하거나 연행 시 저항이 없음에도 수갑을 사용하고, 입소 시 인권위 진정 절차에 대한 고지도 없는 등 적법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이 가스총까지 사용해 이주노동자들을 연행하고 연행 중에도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를 목격하고 만류하던 마석 살롬의 집 소장인 이정호 신부를 발길질하고 대로변에 내팽개쳐 실신시키기도 했으며 경기 안산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 앞에서 농성 중이던 외국인 노동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선교센터 소장인 박천용 목사를 30여m 끌고 가는 등 단속 시 가혹행위도 문제되고 있음.

(3) 보호시설 : 보호시설과 관리인력은 양적, 질적인 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국내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수용하는 시설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화성 외국인보호소(400명 수용, 법무부직원 6명, 경비용역업체직원 11명, 공익근무요원 3-4명)와 전남 여수 출입국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보호소(130명 수용, 법무부직원 3-4명, 경비용역업체직원 2명, 공익근무요원 5명) 등 2곳과,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18개 출장소 및 분소의 일부 공간(10-20명씩 수용)을 들 수 있는데 다 합쳐도 보호외국인 1000명 정도만 수용할 수 있고 관리인력의 경우 전문적인 훈련과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다언어적 환경과 문화적 이질성에서 오는 의사소통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음. 2001년에는 보호소가 만원이라는 이유로 보호외국인을 교도소에 수용한 적이 있으며, 2003년 11월에는 법무부에서 교정시설 등을 활용하려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한 적이 있음.

(4) 위생과 진료 :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공중보건의 1인과 간호사 1인이 있으나 2004년 민주노동당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의 '화성 외국인보호소의 인권침해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보호외국인들은 질병이 생겨도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병원치료의 경우 자비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단식농성 중인 보호외국인들을 위해 의약품을 전달했으나 보호소측은 7일이 지난 후에야 이를 보호외국인들에게 전달했고 한 보호외국인의 경우 체중 36kg 혈당 43(쇼크사 가능성 높은 상태) 탈수에 장흡착 증세로 병원 입원 요구했으나 무시당했으며 단식농성 외국인들의 경우 20일이 지나서야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보호소측은 '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계속적인 치료에 난색을 표명함.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에서 단식농성 외국인들에 대한 적절한 의료조치 문외에 화성외국인보호소장은 "육안 관찰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답변만을 하였고 여수외국인보호소장은 단식농성 외국인들을 면회 온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어느 나라가 불법체류자에게 먹여주고 재워주느냐"고 오히려 언성을 높임.

(5) 면회와 통신 등 : 민주노동당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김선희 투쟁국장에 의하면,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 이모(공익요원) 씨는 면회인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던 김현주(대구성서공단 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사업부장)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몇 차례나 가격해 코뼈를 부러뜨렸음. 더구나 현장에 있던 다른 직원들은 이러한 폭력행위를 지켜보기만 했음. 이 사건과 관련해 보호소의 한 관계자는 "이 일은 개인간에 일어난 폭행사건일 뿐이며 당사자들끼리 풀 문제"라며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어떠한 책임도 질 계획이 없다"고 밝혔음. 인권단체이주노동자지원대책위는 정부의 집중단속 기간 중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위해 보호소를 방문, 면회를 신청하려 했으나 보호소 측은 직원 10명을 동원하여 보호소 정문도 허용하지 않음. 대책위의 항의에 보호소는 보호소 앞의 신고된 집회를 이유로 '보호소의 안전이나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호소장이 면회를 허락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호규칙 30조를 들이대며 면회를 허용하지 않았음.

(6) 안전과 질서유지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5일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수용 중인 외국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캠코더로 촬영한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음. 인권위는 이에 따라 화성외국인보호소장에게 캠코더 촬영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고 관련 직원에게도 특별인권교육을 권고했다고 말했음. 인권위는 "조사결과 작년 10월7~9일 아침.저녁 인원점검 시간에 외국인들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네 차례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외국인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촬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이는 개인의 초상권 등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말했음.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감시카메라 한대가 180도 회전하면서 24시간 동안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있음.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김익환 소장은 이에 대해 "노동자들이 혹시 자해행위를 할 것을 우려해 감시카메라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감시카메라 때문에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감시카메라를 창문 쪽으로만 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7) 강제퇴거절차 등 :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보호외국인 중 대다수는 강제퇴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보호소 내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절차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고, 2004년 민주노총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가 최근 작성한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인권침해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강제퇴거 명령서와 이의신청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등이 영어와 한글로만 작성돼 있어 보호외국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출입국관리소 측이 본인들 직접 서명하지 않은 여행사증명서를 위조하여 강제퇴거시키려고 한 사례가 있는 등 강제퇴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상의 문제가 있음. 지난 95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귀순요청이 거부돼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한 필리핀 탈북자가 7년을 끈 재판에서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승소했음. 서울고법은 2003년 1월 3일 탈북자 김모씨가 화성 외국인 보호소를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처분 등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호소가 수용자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내릴 때 명령의 취지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강제퇴거 명령서를 발부하도록 한 법규를 어기고 원고에게 퇴거명령을 구두로만 통보, 원고가 이의신청 등을 통해 불복할 기회를 박탈한 만큼 피고가 내린 명령은 무효"라고 밝혔음. 2000년 법무부 보호외국인 처우 개선방안에 의하면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중인 외국인들 중에서 체불임금이나 채권과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일정 심사를 거쳐 보호조치가 일시 해제돼 소송이 끝날 때까지 강제추방을 유보하기로 하고 소송 제기자가 아니더라도 심사를 통해 영수증이나 차용증 등 근거가 있을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이나 빌려준 돈을 받을 때까지 강제출국을 유보하기로 하였으나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강제퇴거를 당하는 경우 많음. 일자리 없이 잡힌 노동자는, 친구나 본국에서 교통비를 지불해주지 않는 한, 몇 달이고 구금되기도 함.